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목차] -

1. 공정하고 적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1-1.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및 사안조사1						
1-2.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구성	성 및 운영3					
1-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한 조치10					
1-5.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1 0. 71M 48 TAME 4 TREET						
2. 관련서식						
내시소 시그저스대자	IJ시② 하고푸려 ILOIH그					
서식① 신고접수대장 21 서식③ 긴급조치 보고서 23	서식② 학교폭력 사안보고 22 서식④ 학교폭력 확인서 24					
서식⑤ 보호자 의견서 25	서식⑥ 사안조사 보고서 ······ 26					
서식⑦ 자체해결 동의서 ······ 27	서식⑧ 심의결과 보고서 28					
서식 ⁽⁹⁾ 담임교사해결확인서 29	서식⑩ 심의(소)위원회 개최 요청서 … 30					
서식⑩ 심의(소)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 … 31	서식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2					
서식⑬ 위촉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 33	서식⑭ 심의(소)위원회 위원 위촉장 … 34					
서식⑮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부 35	서식⑮ 심의(소)위원회 참석 요청서 … 36					
서식⑰ 서면진술서 ······ 37	서식® 기피신청서 38					
서식(19) 심의(소)위원회 등록부 39	서식②) 분쟁(회복)조정 신청서 40					
서식② 조치의결서 41	서식 ^② 조치결정통보서 ······ 42					
서식② 조치이행 요청 공문 43	서식@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 44					
서식②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청구서 ··· 45	서식(3)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46					
3. 부록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회의	시나리오(예시)』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 73					
_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83						

- 4 -		4	
-------	--	---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u>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u>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u>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u>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u>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u>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u>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u>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도란도란' http://doran.edu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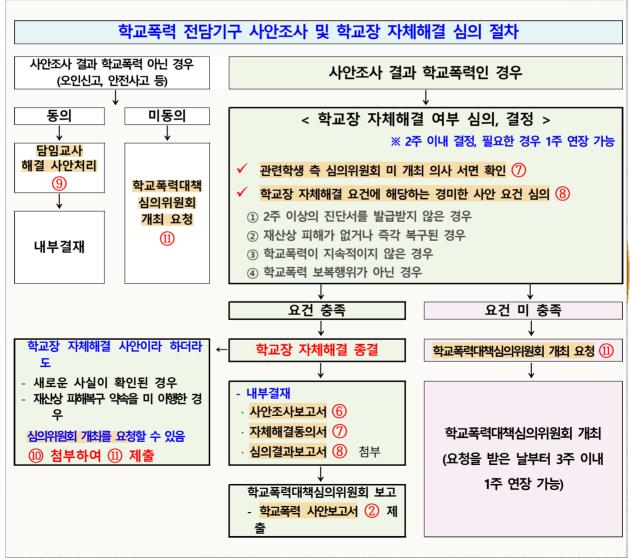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크리스트

학교명	00학교	こトニトエト	담당자 (교육청)		(교육청) 063-000-0000
국파 o	<u> </u>	(학교)	연락처	(학교) 063-000-0000	
사안유형		발생일시	2020.00.00.()	접수번호	2020-00호

구분	점검사항	확인서식	점검결과		
	1. 학교폭력 사안 신고접수 확인		□ 접수 □ 미접수 □ 기타()		
	2. 학교장 보고 확인	서식 ①	□ 보고 □ 미보고 □ 기타()		
학교	3.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확인		□ 통보 □ 미통보 □ 기타()		
^{국교} 초기	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확인	page 1~2	□ 학운위 추천 □ 학부모 과반수 위촉		
대응	5. 사안조사 확인	서식 ④56	□ 조사 □ 미조사 □ 기타()		
410	6. 긴급조치 여부 확인	서식 ③	□ 피해학생(1호) □ 가해학생(1호)		
	7. 회복(분쟁)조정 신청 확인	서식 ⑩	□ 신청 (신청일:		
	8. 학교폭력 사안보고 확인(48시간 이내)	서식 ②	□ 보고 □ 미보고 □ 기타()		
	1. 담임교사 해결 사안인 경우		□ 오인신고 □ 안전사고 □ 기타()		
	- 담임교사 해결 내부결재 확인	서식 ⑨ 첨부	□ 내부결재: 2020. 00. 00.		
	- 교육지원청 보고 확인	서식 ②	□ 최종보고: 2020. 00. 00.		
	2.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 경우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확인		□ 개최일: 2020.00.00.		
사안	- 사안조사 및 심의결과보고서 확인	서식 ⑥⑧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2020.00.00.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화인		□ 동의 □ 부동의 (제출일: 2020.00.00.		
및 +J21		-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확인 서비 ⑥78 첨부	□ 내부결재: 2020. 00. 00.		
처리	- 교육지원청 보고 확인	서식 ②	□ 최종보고: 2020. 00. 00.		
결과	3.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안인 경우				
		서식 ③④	□ 긴급조치보고서 □ 진술(확인서)		
	- 심의위원회 제출서류 확인	서식 ⑤⑥	□ 보호자 의견서 □ 사안조사보고서		
		서식 8⑫	□ 심의결과보고서 □ 개인정보동의서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서식 ⑪	□ 요청일: 2020. 00. 00.		
	1. 심의위원회 개최일		□ 개최일: 2020. 00. 00.		
	2. 회복조정신청 여부 확인	e ‡ 101	□ 신청일: 2020. 00. 00.		
	- 조치 결정 유보일	서식 ⑳ 확인	□ 유보일: 2020. 00. 00.		
	3 피·가해학생 조치이행 요청일	서식 ② 확인	□ 요청일: 2020. 00. 00.		
	4. 기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기재 확인	서식 @	□ 기재 □ 미기재 □ 기타()		
 조치	5. 생활기록부 기재 확인	서식 ② 확인	□ 기재 □ 미기재 □ 기타()		
이행	6. 관련학생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	서식 ②②	□ 피해학생(1호), 기관명: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확인	□ 가해학생(1호) □ 특별교육이수 00시간 - 기관명: - 기관명: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 기단 8. □특별교육이수 00시간, 기관명:		
	7. 피·가해학생 조치사항 이행				
	가 되는 다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완료보고	서식 ②	□최종보고: 2020. 00. 00.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면담, 상담, 목격, 신고, 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안 인지(접수) 학교 교육지원청 - 피·가해학생 조치 이행 치 전담기구사안조사 - 생활기록부 기재 초기대응 Οĺ **(4)(5)(6)** - 조치 이행 결과 보고 ② 행 - 사안접수(파악) 회복조정 신청 접수대장기록 - 소위원회 배정 (1) (20) - 소위원회 심의(의결) - 행정심판 청구(90일 이내) - 학교장 보고 - 심의위원장에게 보고 조 - 보호자 통보 - 생활기록부 기재 - 결정통보(서면) 치 - 줈싸만 없고 - 행정심판위원회 불 학교장 자체해결 - 조치이행 요청 교육청사안보고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복 심의 (2주 이내) 2 조치이행 유보 1주 연장 가능 조 회의 도중. 당사자 모두의 - 회복조정 결과에 따라 치 동의 하에 회복조정이 유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신청된 경우 🔕 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닌 경우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인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및 사안조사 1-1

▼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

사안인지 - 신고접수 대장기록 (1)

즉시조치 및 사안 통보

- 학생 안전조치 및 학교장 긴급조치 ③ - 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 통보 - 보호자 통보(유선, 내교요청 등)

사안조사 및 보고 회복조정 신청 (20) 사안진술(확인)서 (4)(5) - 사안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2주애 1주(짱가능) - 사안조사보고서 ⑥ - 자체해결동의서 (7) - 심의결과보고서 (8)

- 즉시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교장 긴급조치 가능
 - * 학교장 긴급조치 : 피·가해학생 구분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 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 통보 → 해당 학부모에게 신속(명확)하게 통보(유선, 내교요청)
- 사안조사: 관련학생 면담(조사), 보호자 의견 확보,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교육지원청 사안보고(팩스): 최초 보고된 사안은 반드시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함

	<mark>최종보고</mark> ②					
최초보고 ②	조사 결과 오인신고 등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			
초기 사안조사 후 48시간 이내 보고	최종 사안조사 후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후 보고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된 후 보고			

- 보고 절차(FAX): 각급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순	교육지원청명	FAX 번호	순	교육지원청명	FAX 번호
1	전라북도교육청	220-9411	8	완주	270-7639
I	학생인권교육센터	237-0120	9	진안	432-6337
2	전주	270-6050	10	무주	322-4649
3	군산	0303-0944-2769	11	장수	351-2718
4	익산	837-1682	12	임실	642-2723
5	정읍	533-5929	13	순창	653-1460
6	남원	631-4701	14	고창	561-5835
7	김제	540-2599	15	부안	581-1318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학교폭력예방법제14조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구성권자: 학교장
- 구성원: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 역할
-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여야 함
- ·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
-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회복조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 학교폭력 가해학생 4,5,6,8호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1,2,3,7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

1호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 9 专 4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학급교체

※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 관리 → 삭제 여부 심의 → 대상자 명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

- · 임기: 전담기구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교원은 근무기간, 학부모는 자녀의 재학기간 활용)
- · 선출 및 위촉방법

교원	학부모
학교장이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 학교장 위촉

· 학부모 위원 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2	4	권	장	7	Q
전급기구 전세 구경된	3		<i>5</i>	6	′	0
학부모 위원	1	2	2	2	3	3

- 전담기구 개최 (분기별 의무개최 없음)
 - · 전담기구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학부모 참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 학부모 참석여부는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 판단

● 학교폭력 사안조사 ④⑤⑥

사실확인 →	정보수집 →	요구사항 확인	\rightarrow	회복조정 여부	$] \rightarrow$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⑥
(학교폭력 학	행위의 유형별 중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현	행위으	l 경중 판단 요소)
- 경제적 폭력: Î - 정서적 폭력: Î - 언어적 폭력: §	피해의 심각성, 반		<u>-</u> - -	심각성, 고의성, 지륵	생에 [녹성, 변	지 여부 대한 협박(보복)행위인지 여부 반성(화해)의 정도, 선도가능성 서클, 행위의 주도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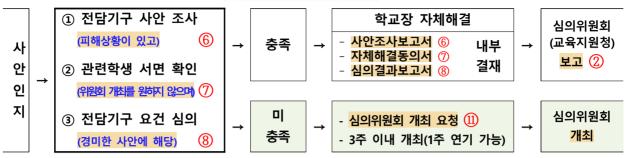
- 사실확인: 피·가해·목격학생 대상 면담 실시 및 확인서(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확보 ④⑤
 - · 설문조사 실시, 증거자료 수집(이메일, 채팅, 문자메시지 등),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정보수집: 피·가해학생 교우관계, 학교생활, 사안경험 유무, 상담내역, 특이사항 등
 - · 정황파악: 피·가해학생의 현재 상태 및 대응능력, **힘의 불균형 등을 파악**
- 요구사항 확인: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 및 방향성 파악
- 회복조정: 관계개선 및 회복을 위한 조정의사 확인 및 조정 지원 요청 (회복조정지원단 신청) 🐠
- 보고서 작성: 면담일지 등을 토대로 <mark>사안조사보고서 작성</mark> ⑥

(관할구역 내 다수의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예시 안

- ✓ 사안보고 : 학교별 사안보고(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 ②
- ✓ 1차 사안조사 : 학교별 1차 사안조사 실시 3456 및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78
- ✓ 관련학교 담당자 협의 : 1차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결과 공유 등

학교장 자체해결 부동의
- 학교별 사안조사 내용 및 쟁점사항 등 협의
- 학교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일 조정 (00일까지 요청)
- 학교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공문 발송 🕕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 전담기구는 사안인지(접수)일로부터 <mark>2주 이내</mark>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필요시 1주 연장 가능)

- 기준: <mark>관련학생 측 모두가</mark>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 기준)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진단서 회수 불가)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피해가 복구되거나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측이 인정)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위원들이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 유의사항

- · 학교장 긴급조치 시안을 학교장 지체해결로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내부결제)
- ·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 · 동일 시안에서 관련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학생이 지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어야 자체해결 가능
- · 전담기구는 사건인지 후, 2주 이내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완료 및 결정 (필요시 1주 연장)
- ·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사안조사보고서 ⑥, 자체해결동의서 ⑦, 심의결과보고서 ⑧ 첨부)
 - ** 내부결재 \rightarrow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bigcirc \bigcirc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서면, 유선, 문자 등)
 - ※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피해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의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 학교 간 사안조사 공유(협조) → 전담기구 심의 → 학교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로 된 경우만 종결
- ✓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1-2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예방법제12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내의 법정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징계, 분쟁조정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2

(반드시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2020학년도 위촉 즉시

- 소위원회 위임사항 의결
- 소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1학기말

1학기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일괄보고

2학기말
+ 2학기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일괄보고

- ✓ 소위원회 위임사항 :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긴급조치 관련 사항 등
- 2020년 심의위원회 위촉 즉시, **전체회의 개최** → <mark>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소위원회에 위임</mark>
 - · 위임의 효력: 2년 (2년 후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위임 절차 다시 거쳐야 함)
- 소위원회 심의안건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 학기별 1회 개최 권장
 - ※ 2020년 1(2)학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사안 → 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후 일괄 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제14조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인원	학부모위원	임기
심의위원회	교육장	임명(위촉)	10~50명	1/3 이상	2년

- 구성권자: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4)(5) (교육장이 위원장 지명)
- 위원수: 10~50명(전체위원의 1/3이상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참고
- 임기: 2년(연임가능,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임기)
- 간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지원청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 지명
- 소위원회 구성(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
- √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그 외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예시)
- ✓ 소위원회 구성 : 5~10명 이하로 구성 (학부모 1/3이상 구성) → 심의위원회 학부모 구성 수를 준용
- ✓ 소위원회 위원(장) :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 (여러 소위원회 겸임 가능)
- ✓ 간사 : 교육지원청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별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운영 가능

※ 교육지원청별 소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수립 후, 심의위원회 보고

- 소위원회 구성(안)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인원	학부모	비고
소위원회	교육장	지명(겸임가능)	5~10명	1/3 이상	관할교육지원청 소속학교 학부모

▼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법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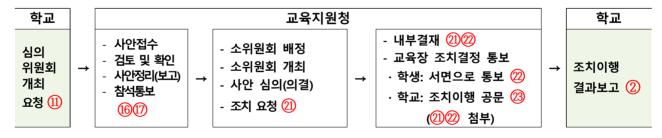
- 대상: 관련학생이 각각 다른 관할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 구성: 교육지원청간 협의를 거쳐 10~50명 이내로 구성 (1/3이상 학부모)
 - ※ 공동심의위원회는 직접 사안을 심의하므로 소위원회 구성 불필요 (10명 ~ 15명 내외로 구성 권장)
- ⊙ 절차



-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간 협의를 통해 사안조사 및 절차 반드시 공유
-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관련학생 모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 조치결정: 공동심의위원회 결정 → 관할교육장에게 조치 요청 ② → 교육장 결정 통보 ②②
 ※ 학교에 조치이행 요청을 하는 경우, 조치 의결서②, 조치결정 통보서② 첨부
- 학교는 생활기록부 기재 후, 조치이행 → 관할교육지원청으로 <mark>조치이행 결과 통보</mark> ②

▼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예방법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4조제14조의2

● 심의(소)위원회 운영 절차



- 개최요청 서류 접수 (공문 발송 시 비공개 설정하는 등 문서 보안에 유의)
- 각급학교 → 관할교육지원청으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mark>개최요청 공문 발송</mark> ⑪

(철부서류) ① 긴급조치 보고서 ③ ② 피해, 가해, 목격학생 진술(확인)서 ④ ③ 보호자 의견서 ⑤ ④ 사안조사 보고서 ⑥ ⑤ 심의결과 보고서 ⑧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⑫ ⑦ 기타 서류 ※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서류 제출 요청 및 직접 조사 가능 ※ 학기 초 개인정보제공 동의 내용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보제공 사항을 포함할 경우, ⑫ 생략 가능

- 사안검토 및 쟁점 확인
 -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사안의 실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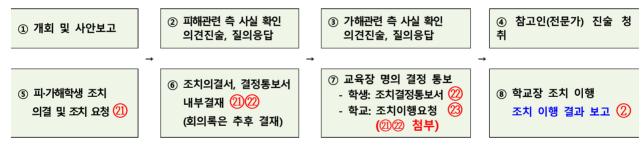
- 심의(소)위원회 배정
 - 사안의 성격과 유형 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소위원회에 배정
- 심의(소)위원회 개최 취소

- 심의(소)위원회 개최(소집)
- 소집주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소집요건)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 가해학생이 협박(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기한: 학교의 개최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3주 이내 개최(1주 연기 가능)
- 개최통지 방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문 및 서면 통보(최소 1주일 전) ⑩⑰ * 개최통지서: 회의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를 기재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진술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 심의(소)위원회 개의 및 의결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된 경우, 회의 종료 시 까지 과반수 참석을 유지하여야 함
 - 절차



※ 서면 통보기한: 피해학생 7일, 가해학생 14일 이내 통보

- 유의사항

- · **대면심의를 원칙**(부득이한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 활용 가능)
 ※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 학교장 및 관함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 및 해당학교 교원 출석 및 서면 요청 가능
- · 관련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위원회 참석 시 인정결석 처리**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개별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

 ※ 개별성: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경우, 세부기준을 각 학생별로 적용하여야 함
- · 장애(다문화)학생인 경우, **특수(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 피·가해 구분 및 심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유보결정 통보 → 추후 결재
- ·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조치를 유보하고 **분쟁(회복)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 회복조정지원단이 제출한 조정결과 보고서를 고려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9조

		_			기본 판단 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판정 7	수본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1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l		1호	서면사과			1~3점			
가 해	교 선.		2호	접촉금지	피해학생	J 보호에 필요	하다고 심의	위원회가 의결	별할 경우	
학			3호	교내봉사			4~6점			
생 에	외· 기·	ㅡ 부 관	4호	사회봉사	7~9점					
.,	외· 기· 연. 선.	계 도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대 한		교	6호	출석정지 10~12점						
조	교육 환경	내	7호	학급교체	13~15점					
소 치	변화		8호	전학	16~20점					
		외	9호	퇴학처분	16~20점					
부기 판단 <u>:</u>	├적 요소			능성 고려: 출석위원 과반: 생 여부: 피해학생이 장애						
		√ 2	님의위·	원회는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다라 조치 결정	 덩		
		√ 7	기본 핀	· 단 요소별로 협의하여 판	한정 점수 결정	성(합계 점수0	∥ 따른 평균점	범수 산출 금기	۲)	
		✓ 2	호, 53	호 조치는 판정 점수에 띠	h른 조치가 O	나니며 필요성	에 따라 출석	위원 과반수를	로 결정	
유의	사항		(1, 3,	1차 평가 4, 6, 7, 8, 9호 조치 결정)	→ (2, 5호 조)	2차 평가 치 심의, 단독조차	기능	3차 (부가적 판단	• .	
		✓ 2	E치 결	현정을 함에 있어 가해학성	뱅 긴급조치 /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Z	당애학	생: 신체적, 정신적, 지적 경	장애 등으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유법 제15조』 ⁰	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인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자를 말함)			
이행	강제			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 가			–	,	원회는 추가로	
	O· II		나른 조	지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 요청할 수	있음 (학교폭	력예방법 제1	7조 제11항)		

⊙ 조치의결 사항 요청 및 통보

심의(소)위원 회	심의(소)위원회 → 교육장		교육지원청 (내부결재)		교육장 결정 통보
- 조치 의결 →	- 조치 의결서 송부, 요청 ②1	→	- 조치 의결서 21) - 조치결정 통보서 22) (결정일자 미기재)	→	- 내부결재일 기준으로 조치결정 통보서에 결정일자 기입 - 결정통보 · 학생 측: 서면통보 ② · 학교 측: 이행공문 ② (② ②첨부)

- 내부결재: 조치 의결서와 결정일자 미 기재된 조치결정 통보서 내부결재
- 결정일자: 조치결정 통보서에 **내부결재 일자를 결정일자로 기재 후 학생 및 학교 통보** * 조치결정 내부결재 일자와 결정 통보서 결정일자가 동일하여야 함 (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일자로 활용)
- 결과통보: 피해학생 7일, 가해학생 14일 이내 **서면으로 결과 통보** (조치 근거와 이유 제시)

* 학교 : 조치이행 요청 공문 ② 발송 (②)② 첨부)

- · 행정심판 등의 불복에 대한 절차 안내(청구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개인별로 조치 결과를 기재하여 통보
- 회의록은 작성 완료 시, 별도로 내부결재 가능 (조치 의결서로 대체)
-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1항
- 피·가해학생 조치 이행 요청(공문) ② (②② 첨부) → 학교장 조치이행 결과 보고 ②
 - ※ 학교는 피·가해학생이 조치결정 통보서를 수령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조치이행 개시를 알려야 함

(조치를 받은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 보고 →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학기별 정기보고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2제4항
 - 소위원회 심의· 의결 사안 → 심의위원회 일괄 보고 (학기별 1회 전체회의 개최)
 - 비밀유지
 ② (13)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비밀유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밀의 범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관련 개인별 발언 내용, 분쟁(논란)의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정보공개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
 - 회의록 작성: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
 - ·심의(소)위원회는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 생산 및 공개할 의무가 없음
 - 회의록 공개: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등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 공개방법: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 · 결정기간: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 · 결정기간 연장: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연장사유 문서 통지)
 - · 공개범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 회의록 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 : 본인의 최초 진술(확인)서 및 대략적인 사안요약 정보는 공개 가능
 - 위원수당
 - 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 ·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2시간 8만원, 초과 4만원(일일 최대 12만원)
 - * 교원은 수당 지급이 불가하며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은 수당 지급 가능
 -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6조
 - 기피신청을 (8) 받으면 해당위원을 제외한 <mark>심의(소)위원회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속개</mark>

▼ 분쟁조정(회복조정지원단 운영) 학교폭력예방법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5조제27조 제28조제29조

√ 분쟁조정(회복조정) : 관련학생간 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 조정개요

- 목적: 회복·조정 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 등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교육력 회복을 제고
- 대상: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생체벌 등 교육공동체 간에 발생된 각종 갈등 및 분쟁
 - ·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간, 교사-학부모(학생) 간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 신청이 있는 사안
 - · 심의(소)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학생 측 동의가 있는 사안
- ※ 심의위원회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을 통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조정기간

-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정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조정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및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조정절차



- 조정신청 20

- · 학교: 회복조정 신청서 20를 작성하여 관할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공문 제출
- · 심의위원회: 조치유보 \rightarrow 회복조정 의뢰 \rightarrow 신청서 작성 \bigcirc 00 \rightarrow 도교육청 공문 제출

※ 원활한 회복조정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회복(분쟁)조정 담당자 1인 지정

- 학교(교육지원청) 방문 및 조정위원 배정

· 사안 공유 및 특성, 쟁점 파악 → 조정의사 확인 → 조정위원 배정 → 조정개시

- 조정을 위한 대화모임

- · 사전대화모임(예비조정): 당사자별 사전대화모임을 통해 쟁점 및 요구사항 파악
- · 본대화모임(본 조정): 당사자별 쟁점 및 요구사항 공유, 합의문 작성 등

- 조정결과 통보

- · 조정위원 학교(교육지원청) 방문 → 조정결과 설명 및 공유(협의) → 결과보고서 제출 ※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이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정결과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음
- **사후관리: 해당학교에서 당사자 간 합의사항 이행 확인** → 담당 조정위원 공유

● 유의사항

- 조정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및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사안공유 및 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원활한 회복조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회복조정 담당자 1인 지정하여 운영

1-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지원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6조의2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 ✓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해당조치를 하여야 함

1호	2호	3호	4호	6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의료기관, 법률구조 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등을 요청
- 피해학생 긴급조치 ③ : 1호(심리상담), 2호(일시보호), 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추가적인 보호 지원
- **출석일수 산입**: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mark>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mark>
 - ※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의 결석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처리
- 불이익금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 및 각종 평가 등에 불이익 금지, 교육상 필요한 조치 마련 * 피해학생이 결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장애학생의 보호: 특수교육전문가를 통한 장애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 장애학생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상담기관의 요양 조치 지원** * 장애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 **다문화, 탈북학생 보호**: 문화적 특성 고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기관 (6호 조치를 내리는 경우 적극 활용)
- 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
- 비용: 무료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프로그램	
마음치유센터	www.maumhl.kr	063) 271-0117	- 개인(집단)상담, 예술치료 캠프 등	
해맑음센터(기숙)		070 7110 4110	-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캠프, 진로 등	
한국피해자 가족협의회	www.uri-i.kr	070-7119-4119	- 위로상담, 모임, 힐링캠프, 멘토리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없이 132	- 법률상담 및 구조, 소송대리, 형사보호	
대한 변호사협회	www.koreabar.or.kr	02) 3476-4000	- 무료법률 상담 안내 등	

◉ 피해학생 치료비 우선 지원시스템 안내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8조

- 지원대상 및 범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상해비, 심리치료비 지원

구분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의료기관(병원)의 심리치료 비용 및 교육감이 정한 상담기관 의 비용	2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의 치료 비용	(1년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 지원절차

- ✓ 피해학생 측이 해당기관에서 발생된 소요 비용 우선 결제
- ✓ 청구서(제출서류) 작성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www.schoolsafe.co.kr)
- 소요 비용 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원본), 통장 사본, 학교폭력사고 발생 확인서
- 학교폭력 피해학생 확인서(조치결정 통보서,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
- ✓ 학교안전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 가해학생 측에게 지급 결정된 내용 안내 및 지급된 비용 구상(환수)

(교육감이 정한 전문상담기관)

번호	지역명	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63-228-5936
2	전주	마음편한 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3	063-224-8338
3	전주	싹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4	전주	온다라 심리교육 상담실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 501호	063-273-5496
5	전주	지안 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 3층	063-287-1101
6	전주	하람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4	063-247-5543
7	전주	해윰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 2길 3	063-228-0304
8	군산	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9	익산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70-8872-3003
10	익산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4	063-857-8540
11	익산	(유)예술컴퍼니아트문	익산시 동서로 222	063-855-0423
12	익산	호남 뮤직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아파트 105/102	010-7343-9775
13	남원	에덴상담심리연구센터	남원시 성황단길 10 2층	063-625-2012
13	남원	에덴상담심리연구센터	남원시 성황단길 10 2층	

* 개인상담 회기당 5만원, 심리검사 25만원 이내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 가해학생 선도 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 해당조치를 하여야 함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가해학생 조치 이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장 판단 하에 <mark>가해학생 긴급조치</mark> ③ : 1호, 2호, 3호, 5호, 6호 → 심의위원회 추인

* 학교장 긴급조치는 피·가해학생 구분이 명확한 사안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치

- 가해학생 조치별 유의사항

조치이행 완료일 명시	시간단위 조치	조치기간 명시	일 단위 조치
- 서면사과, 교내봉사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 접촉금지	- 출석정지
예시) 00월 00일 까지 이행	예시) 00시간	예시) 0월0일~0월0일	예시) 00일

※ 교육지원청의 가해학생 조치 이행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frac{1}{1}$ $\frac{1}{1}$

- 1호(서면사과) 조치완료 기간 명시
- 2호(접촉금지) 조치기간 명시
- 접촉의 범위: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에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제외
- 3호(교내봉사) 조치완료 기간 명시
-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단위 조치(화단·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등)
- 4호(사회봉사) 시간단위 조치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봉사(1365 나눔포털, VMS, DOVOL에 등록된 봉사기관 활용), 봉사활동 시수 불인정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간단위 조치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조치
- 학생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 특별교육 발생,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미 발생
- · 심리치료 : 교육의 관점이 아닌 우울증, 정서장애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가해학생에게 정신과 진료를 내리는 조치**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학부모 특별교육 미 발생을 위한 심리치료 조치 절대 금지)**
- 6호(출석정지) 일 단위 조치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간 설정)
-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도록 해야 함(자율학습, 위탁교육, 가정학습 등이 가능하나 기간 내에 무단결석 처리)
- 7호(학급교체) 해당학교 학급 수 확인
- 8호(전학)
-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2020년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고)
- 동일지역(계열)의 배정원칙에 따라 관할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정원 외 3%)
- 전학 조치된 학생은 전적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음(고등학생 1년 이내 전적교 소속 지역 전학 불가)
-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각각 다른 학교 배정
-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 주소지 이전 등의 자발적 전학 불가
- 9호(퇴학)
-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 전학 및 자퇴 등 불가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3항제9항

✓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생활기록부 미기재

✓ 가해학생이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및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발생 ※ 가해학생 심리치료 : 보호자 특별교육 미 발생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 ✓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내린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발생
 - 통보방법: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2주 이내 서면으로 통보
 - 이수기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mark>3개월 이내 이수 학교폭력예방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mark>

교육지원청 → 보호자

- 시간을 정하여

2주 이내 안내 22

(조치결정 통보서 기재)

학교장→ 교육지원청

- 보호자에게 시간 장소 안내 - 3개월 이내 미 이수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교육지원청 → 보호자

- 14일 이내 재 통보 - 1개월 이내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서면 안내

교육지원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별교육이수 권장시간 (학교폭력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가해학생 조치	특별교육	추가 여부	권장시간	
기에릭형 조시	학생	보호자	건경시간	
1호(서면사과), 9호(퇴학)	×	×	-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0	0	4시간 이내	
5호(특별교육이수)	×	0	5~8시간 이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0	Ο] 3~6시간 이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기간의 제한이 없음

● 특별교육기관 지정 현황 (Wee클래스 및 학교 상담실: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적극 활용)

TICH	단기 특별교육기관							
지역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	063-253-9214(덕진), 063-253-9523(완산)	063-273-1411(전북), 063-236-1388(전주)						
군산	063-450-2680	063-468-2870						
익산	063-850-8990(제1), 063-852-4501(제2)	063-856-2008						
정읍	063-530-3080	063-531-3000						
남원	063-635-8530	063-633-1977						
김제	063-540-2551	063-544-1377						
완주	063-270-7687	063-291-7373						
진안	063-430-6294	063-433-2377						
무주	063-780-7002	063-324-6688						
장수	063-350-5228	063-351-2000						
임실	063-640-3571	063-644-2000						
순창	063-650-6322	063-653-4646						
고창	063-560-1613	063-563-6793						
부안	063-580-7483	063-581-5839						
전문기관	전주시청소년꿈키움센터(063-277-9890), 전북 스마트쉼 센터(063-288-8496)							

위탁교육시설 현황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

순	지역	기관명	기관명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1	전주	꿈누리교실	063-253-2276	12	군산	다음세대학교	063-452-6326
2	전주	나-움트리학교	063-236-9801	13	군산	군산YMCA	063-446-4122
3	전주	민들레학교	063-283-1356	14	익산	익산시청소년수련관	063-838-1700
4	전주	명주골학교	063-247-8311	15	정읍	샘고을집강소	010-6423-9620
5	전주	움티학교	063-285-4344	16	남원	남원시청소년수련관	063-625-3363
6	전주	어울림힐링학교	063-237-1134	17	무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646
7	전주	전주YMCA	063-272-4466	18	고창	희망샘학교	063-562-2811
8	전주	가람학교	063-224-0316	19	고창	책마을해리	070-4175-0914
9	전주	선너머학교	263-232-0334	20	대전	해맑음센터	070-7119-1707
10	군산	가온누리희망틔움	070-8738-1318	21	용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70-4420-1933
11	군산	산돌학교	063-446-4460	22	전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063-255-1336

1-4 불복 절차

● 학교폭력 조치 불복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

✓ 교육장이 내린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mark>전라북도교육행</mark>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법무팀(063-239-3547)

피·가해학생 측
- 교육장이 내린 파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해저시파 겨저/가치 기가 이요)	

행정소송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 피·가해학생 측은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
- 행정심판의 대상: 교육장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행정심판 청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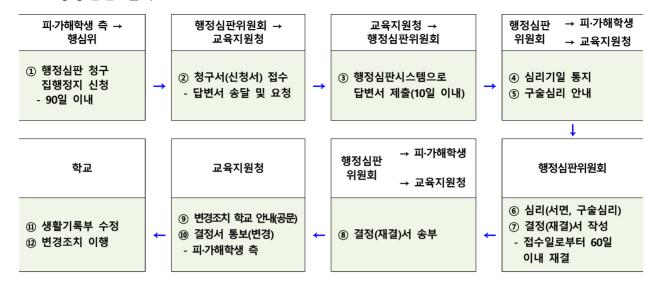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교육장 명의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함

- 행정심판 청구방법: 우편청구, 방문청구, FAX 등
- 집행정지: 행정심판의 청구만으로 조치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같이 청구하여야 함
 - ※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 우선 기재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정
 - · 학교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피해학생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행정심판 절차



- 행정심판 시스템 등록 방법



- · 행정심판 시스템 접속: http://jbe.simpan.go.kr/spd
- · 등록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044-200-7951) → 계정신청 및 작성 → <mark>권한승인 요청</mark>
 ※ 권한승인 요청 방법: 전화(행정심판위원회 담당 주무관 이가영, 063-239-3549) 또는 jb메신저를 통해 요청
- · 행정심판 시스템 로그인 후,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법무팀 행정심판위원회, 063-239-3549

- 학교폭력 외 학교생활 조치 불복 (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 ✓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 전학 및 퇴학 조치에 대한 불복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②5
 - 그 외 조치에 대한 불복 → 공립(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사립(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생활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1호 학교 내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4호 출석정지

5호 퇴학처분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퇴학 조치를 내린 경우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 재심청구기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조치를 받은 날: 도달주의에 따라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청구(초일불산입)
- 대상: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학생
- 집행정지: 재심 청구서가 🚳 접수된 날부터 결정 통보 일까지 자동 유보
- **담당부서**: 교권보호위원회(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09) 학생징계조정위원회(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63-239-3462)

1-5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 제·가해학생조치 결정 생활기록부 및 관리기록 기재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집 ★ 학교 → ★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조치이행 요청 조치이행 생활기록부 정정

-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방법(예시)

조치사항	영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 (2020.00.00.)
2호	행동특성 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접촉금지 조치 (2020.00.00.)
3호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내봉사 10시간 조치 (2020.00.00.)
7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급교체 조치 (2020.00.00.)
4호	출결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20시간 조치 (2020.00.00.)
5호	돌길사항 특기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조치 12시간 (2020.00.00.)
6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조치 5일 (2020.00.00.)
8호	학적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2020.00.00.)
9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 (2020.00.00.)

* 생활기록부 기재일자: 교육지원청 조치 결정 통보서 날짜를 기입하시고 불복을 제기해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일자는 그대로 두고 조치사항만 수정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mark>즉시 생활기록부 기재</mark> (피해학생은 미기재)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추가되는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는 미기재**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이 복교한 경우, 이전의 가해학생 조치사항 유지

●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

-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대상 가해학생 조치

1호	2호	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 기재 유보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 ·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3호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중,
- · 동일 학교급에서 (초등학생은 3년 간)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 · 조건부로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기재하지 않음
- · 다만, 동일 학교급에서(초등학생은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 · 이전에 미기재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기재
 - *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된 제1,2,3호 조치도 <mark>학교폭력 관리대장</mark> @에 기재하고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교에 통보하여 관리·보유하여야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삭제 방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7호(출석정지) 조치는 별도의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가해학생 조치사항	영역	삭제시기
1호 2호 3호 7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 삭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4호	출결사항	- 원칙: 졸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삭제 -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5호	특기사항	· <mark>동일학교 급에서</mark>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6호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에만 심의대상으로 올릴 수 있음
8호	학적사항	* 참고 제출자료: 담임교사 의견서, 조치이수 확인서류, 본인 자필 의견서 등
9호		- 삭제대상 아님

*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해학생 조치대장을 🙆 작성하여 관리



[서식 ①]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필수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접수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연락처) 또는 신고기관	(연락처) 또는	(연락처) 또는	(연락처) 또는	(연락처) 또는	(연락처) 또는	(연락처) 또는	(연락처)	신고내용	접수 사실 등 통보	통보 일시 및 방법	확인	
				피해관련 학생/보호자	가해관련 학생/보호자	담당 교사	학교장							
20 -1	2020. 03.03. 11:30	○○○, ○○중 (교사, 학생)	김○○이 정☆☆에게 1월 20일 학교 앞 공원에서 금품을 갈취하 는 것을 목격함 등		3.3. 14:00, 전화, 문자									
20 -2														
20 -3														

[참고] 접수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학교여건에 따라 교감 전결 가능 (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학교폭력) 사안 보고

보고 🗆 최초 🗀						☐ Ž	시종년	고						우지원청
구분 보고				임교	· 1	학교장			심의위원		$\bigcirc\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장	학교장	
				결		자체해?			개최				직인	
구 분	-	단순 폭행	집 목 학	한 금 행 같	?품 날취	따돌림 괴롭힘	언어 폭력	/	사이버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학생 체벌	기타
체크(C))				0									
		ı										<u> </u>	H표유형 	하나만 체크
학교	. 명			학교		교감	성명:	\circ	\circ	() j	교 장 성명	3: 0	0 0	
		2	피해추.	정 학생((특수	여부 기입				가하	추정 학생	!(특수여부	- 기입)	
		학교		년/반		성별	성명			교	학년/반	성별		성명
관련)○중		3/1		남	00)중	3/1	남		000
학생	C)() 중		3/1	남	(특수)	00	0	00)중	3/1	여(특수	-)	000
	생일	•	20	. 00.			00:00		최초보		20	. 00. (•	
접	수일	!시	20	. 00.	00.0	(요일)	00:00		최종보	고	20	. 00. ()0.(요약	일)
]교시	안내용 	•	* F	학교	장 자체 [†] 1사 해결	해결 사· ! 사안	안 <u>으</u> 내부	로 종? 결재 (서, 무엇· 간략히 입		네, 왜 두)
심의위	위원	회 개최	요청	- 수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일: 개최요청 공문 일자 기입									
		사안		- 수	- 심의위원회 개최일: 위원회 개최일자 기입									
		구분				수	심의위원	회 3	조치 시	-항		조	:치이행	여부
	可	해학생		1ই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등									
가해학생			1ই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등										
향후		학교		С) 상두	담 등의	보호 조	:치 ァ	지속적'	인 실시 ⁻	<u>Ľ</u>			
계획 교육청			С	○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도 당부 등										
		 학	<u></u>	. 직위	:			성명	:		전화	:		
작성기	사	' 교육지		직위				<u> </u>			전화			
		<u> 7 ^ 1</u>	1.0	7 11	•			0 0	•		근거	•		

긴급조치 보고서

* 접수번호: 20 -01

사안	_ 단	순폭행 [□ 집단폭행	□ 금품길	날취		□ 언어폭력	□ 사이버폭력	
유형	□ 성	희록 [] 성추행	□ 성폭형	Ħ	□ 학생체벌	□ 기타		
사안 개요									
구{	분	학년/반	성명			긴급조	치 사항		
				— 1ই, 23	호, 6호	조치			
피해형	학생								
				— 1ই, 23	ই, 3ই,	5호, 6호 조치			
가해학	학생								
긴급조치	치일자	년 월 일							
긴급조 필요		(심의위원	회 추인을	받아야 함)			성도, 가해학생의 <u>한해 제한적으</u>		
관련학신 보호 의견청추	자	① 의견청취 완료 (일시:, 방법:) ②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관련학	생 및	통지일자							
보호자	통지	통지병	}법						
			20	년 ()	○월	OO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학교장 (인)	

[참고] 피해학생 긴급조치는 법률 16조1항에 의거 심의위원회 보고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법률 17조4항에 의거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함

(피해, 기해, 목격학생) 학교폭력 확인서

* 접수번호: 20 -01

성	명		학	년 / 반		/		성별	남 / 여
연택	락처	학생			·	보호ス	}		
관련학생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원하 는 조치		본인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상	대학생	(목격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도움 필요 항목	담	·임교사	(목격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학교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	j	보호자	(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						
작성일			20	년 _년	월	일 :	작성 학생	В	(서명)

보호자 의견서

* 접수번호: 20 -01

학생 /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 인지 경위										
	현 자녀의	•		신체적 - 정신적 -						
	ũ	고우 관계	(친한 친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자녀 관련 정보	관련 유무									
	자녀	^{후인 내용}	(사안에	사안에 대해 자녀가 보호자에게 말한 것)						
현재끼	가 지의 .	보호자 조치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불을 위한 보 제공	(특이점, 성격 등)							
현재 보호자의 심정		(어려운 점 등)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		(보호자가 파악한 자녀의 요구사항 등)								
작성) 일	20	년월	일일	작성자		(서명)			

- 1.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관련학생 개인별 작성)

* 접수번호: 20 -01

	접수 일자	20	년	월	일	담'	당자	000
관련 학생		피해/가해 여부	성	명	학년/반	성 별		비고 (장애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 영역 기재)
	년락처 	학생	(010-00	00-0000	주소	우)0000	·
및	주소	학부모	(010-00	00-0000	, —		101동 204호
	사안 개요	전담기구에	서 파일	ት 된 전치	∥적인 사안경위	를 육하윣	<u></u> 실칙에 의	거해서 자세히 기재
쟁점	피해	사안에 대해	한 피해	추정 학	생 측 입장			
사항	가해	사안에 대학	한 가해	추정 학	생 측 입장			
	관계회복 가능성							
확인 사항	수사기관 신고여부							
	학교폭력 이력							
	기타 이사항	성 관련 사 <u>(</u> 기재	<u>)</u> , 치료:	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	학생인지	여부, 관	런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등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관련학생 개인별 작성)

* 접수번호: 20 -01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유형	간단히 기입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본 사안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 최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하는 데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관련학생: (인)

관련학생 보호자: (인)

00학교장 귀중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결과 보고서

* 접수번호: 20 -01

1.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3. 참 석 자				
000	$\circ \circ \circ$	$\circ \circ \circ$	$\circ \circ \circ$	
000	$\circ \circ \circ$	$\circ \circ \circ$	$\circ \circ \circ$	
> .> -> .				

- **4. 협의주제** : 접수번호 2000-00 호 학교장의 자체해결 심의
- 5. 협의내용
- ※ 전담기구 사안 조사 내용

※ 필수 확인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 여부		
7174-1111	2.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련학생 ○○○	3.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 복구를 약속)		
	4.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5.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 여부		
	2.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_ 관련학생 	3.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 복구를 약속)		
000	4.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5.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 여부		
21242141	2.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련학생 ○○○	3.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 복구를 약속)		
	4.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5.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0 년 월 일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장 (인)

담임교사 해결 확인서 (관련학생별 작성)

* 접수번호: 20 -01

기구를 M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관련학생 -				
내용				

2020년 ○○월 ○○일 ○○시 ○○분경 인지되어 접수된 ○○○와 ○○○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였고 본 사안에 대해 특별한 학교폭력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상기 ○○○는 전담기구 조사 내용에 동의하며, 담임교사 ○○○에게 자체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차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0 년 월 일

> > (인) 관련학생:

관련학생 보호자: (인)

00학교장 귀중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최 요청서

* 접수번호: 20 -01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신청인	주소			
신청사유	약속하였으나 이형	년으로 인한 재산상 손 당하지 않은 경우 건의 조사과정에서 확		
		관한 법률」시행 대책심의위원회		
				2020.00.00.
	C)00학생 보호자	(\(\lambda^2 \)	명 또는 인)

[참고] 본 요청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된 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약속한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거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

○○중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최 요청

-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 2. 위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 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학교 접수번호	비고
피해학생	○○중학교	3–1	000	○○중 2020-1	예시
가해학생	○○중학교	3–1	000	○○중 2020-1	예시

붙임 1. 사안조사 보고서 1부.

- 2. 심의결과 보고서 1부.
- 3. 관련학생 확인서 1부.
- 4. 보호자 의견서 1부.
- 5. 긴급조치 보고서 1부.
- 6. 관련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1부.
-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8. 기타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 1부. 끝.

 학기 초 개인정보제공 동의 내용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보제공 사항을 포함한 학교는 본 서식을 생략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2 0 1	1 10 11 12 0 11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심의결과보고서, 사안조사보고서,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선 조치 보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련 우편송달 등에 사용됩니다.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보유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학교폭력 사안 관련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1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우편 송달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00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성 명						4		<u>-</u> I				
여라뉜	자택					휴디	ዘ전	화				
인탁서	연락처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Ç	일 ~	2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OO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제22조 등에 따른 만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00 교육장 귀하

위촉장

0 0 0

귀하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00교 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 로 위촉(임명)합니다.

(위촉기간: 2020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2020년 3월 1일

00교육지원청 교육장 000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연락처	위촉기간	자격
1	000	○○교육지원청 ○○과		2020.00.00.~ 2020.00.00	위원장 (0000과장)
2	000	OOO학교			교 장
3	000	○○○학교			교 감
4	000	○○○학교			교 원
5	000	○○○학교 ○학년			학부모
6	000	○○○학교 ○학년			학부모
7	000	○○○학교 ○학년			학부모
8	000	○○경찰서			외부위원 (경찰)
9	000	○○○병원			외부위원 (의사)
10	000	○○상담소			외부위원 (상담사)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참석 요청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제00회 학교폭 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녉 일 시 웍

2. 장소

회의장소			
대기장소	피해학생측	가해학생측	

- 3. 안건:
- **4. 사안개요**(사안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녀 월 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 ※ 참고사항
- 1. 문의사항이 있으면 OO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전화 : 000-0000)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3. 관련학생 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진술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 여 00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진술(의견)서

고리 하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관련 학생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귀중								

기피 신청서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2-2-2				
신청인	주소			
지청미요	기피대상자			
신청내 용	신청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0.00.

000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귀중

2O2O학년도 제○○회 심의(소)위원회 등록부

2020. 〇〇. 〇〇.(요일)

순	위원명	서명	비고
1			위원장
2			
3			
4			
5			
6			
7			
8			
9			
10			
7	대적 위원수	명	
출석 위원수		명	
불	출석 위원수	명	

분쟁(회복)조정 신청서

기관명	담당자		
신청일	연락처	사무실	
신경설 	· 한탁시	휴대폰	

マ:	브	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연락처		
						학생	010-0000-0000		
rlələl						보호자	(성함) 010-000-0000		
	당사자					학생	010-0000-0000		
	A					보호자	(성함) 010-000-0000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당사자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당사자					학생	010-0000-0000		
	В					보호자	(성함) 010-000-0000		
						학생	010-0000-0000		
						보호자	(성함) 010-000-0000		
사안 내용		사안내용	은 보다 자	세히 기록	하여 주	시기 바	람(별지 첨부)		
	당사자 A	쟁점사항은	쟁점사항은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별지 첨부)						
쟁점 사항	당사자 B	쟁점사항은	쟁점사항은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별지 첨부)						
	당사자 C	쟁점사항은	쟁점사항은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람(별지 첨부)						
	당사자 A								
현재	당사자								
 상태	В								
	당사자 C								
	경찰신고 언론보도 여부								
특이사항	심의 위원회 개최 여부	심의위원회 - 가해학 ※ 개최 예	생 조치: 0	000, 피형	배학생 :	조치: 000	00, 조치 유보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의결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렸으니 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학생은 7일, 가해학생은 14일 이내 해당조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번호: 2000-00호

1. 개최일시	2. 개최장소	
3. 개최사안		

구분	학생			조치결정(의결) 사항	
一丁七	학교명	학번	성명	조시설성(의설) 사양	
피해	000학교	0000	000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					
ગ્રાસી	가해 000학교 0000	0000	제17조 제1항	제3호 교내봉사	
7 0		0000	0000 000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00시간 보호자 00시간
기체	000をトコ	0000	000	제17조 제1항	제3호 교내봉사
가해	000학교 0000	000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00시간 보호자 00시간	

위 결정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동의합니다.

2000.00.00

직	성 명	서명날인
(소)위원장		(인)
위 원		(인)

직	성 명	서명날인
위 원		(인)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통)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가 결정된 바, 관련학생 및 학부모는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해학생:	○하너	○바 ㅇ]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1.	/ I OII = 1 / 8 ·	() 4 1	() 7 1 0	TT •	

- 2. 피해학생: ○학년 ○반 이름: ○○○
- 3. 사안개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개인별로 해당되는 사안을 기입
- 4. 심의위원회 개최: 20○○년 ○○월 ○○일(조치결정 통보일 아님)
- 5. 의결 및 집행요청 사항
 - 가해학생 긴급조치 사항: 0호 (추인여부)
 - ① 피해학생 보호조치
 - ② 가해학생 선도조치
 - ③ 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이수 시간, 장소 등)
- 6. 결정의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본 사안을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의 폭력 행위가 하급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중하며, 피해학생이 극심한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전학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가해학생의 변화를 위해 교육적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하는 바임

【행정심판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장이 제 16조 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20○○년 ○○월 ○○일 (내부결재일자 기입) ○○교육지원청 교육장(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이행 요청 공문

○○교육지원청

수신 ○○중학교장

(경유)

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조치 이행 안내

- 1. 관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학생에 대한 조치 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조치결과	비고
피해학생	○○중학교	3–1	000	[붙임] 참조	예시
가해학생	○○중학교	3–1	000	[붙임] 참조	예시

- 3. 교육장 조치 결정일(조치결정 통보서 날짜): 2000년 00월 00일
- 붙임 1. 조치 의결서 1부.
 - 2. 조치결정 통보서 1부. 끝.

[참고] 교육장 조치결정일은 조치결정 통보서의 날짜이며 생활기록부 기재일자로 활용

학교폭력 기해학생 쪼치사항 관리대장

연 번	학년	반	번호	성명	조치 사항	조치결정일자 (이행기한)	생활기록부 기재일자 (유보)	조치이행 완료일	기록자
1	3	1	25	000	1호	2020.4.5. (2020.5.5.)	유보	2020.5.1.	홍길동
	3	1	21		4호	2020.4.5.	2020.4.5.	2020.4.30.	홍길동

[참고] 조치결정 일자와 생활기록부 기재 일자는 동일하여야 함 1호, 3호 조치는 조치이행 기한 명시 1호, 2호, 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대상인지 파악 후 기재

				ᄍ	번호	_						
♡ fl(끈약, 퇴약) 제임 '장구'이 │				접	일자	년	월	일				
								수	접수자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청	8 8			642	H P				U/11			
구 인	주소											
	전(퇴)학 학생	성 명			전 소속학교	() -	중 ,고등	등학교 ()학년	()반
	전(퇴)학 조치 학교명	(중	·, 고등학	- <u>파</u>	소재지				학교 장 성명			
전(퇴)학 를 받은 날			년	월	일						
청	청구 사유											
초·중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												
	* 불복절차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_239-3547)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접수번호: 20 -01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요청인	주소			
요청사유				
≖ ⁄8/Υπ				
		관한 법률」시형		
	위와 같이 심의	위원회 개최 취	소를 요청합니다	ł.
	^	100원계 고드니		2020.00.00.
	C)00학생 보호자	(\(\frac{\chi}{2} \)	명 또는 인)

[참고] 심의위원회 개최가 취소된 경우, 학교는 담임교사 해결 또는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회의록 시나리오(예시)

※ [주의]

본 시나리오는 심의위원회 회의진행과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회의시나리오 예시 자료입니다. 사안의 특성, 상황,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〇〇학년도 제〇〇차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회의록(예시)

○○교육지원

청

일시: 20〇〇. 〇〇. 〇〇.(수)

장소 : ○○회의실

심의 안건

1. 접수번호 2020 - 00호 피·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보고 및 추인의 건

2. 접수번호 2020 - 00호 ○○학교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건

(16:00 개의)

▶ 간사

-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입니다.
- ✔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00명 중 0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학년도 제00차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이번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 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의 심의할 안건은

- 1. 접수번호 2020 00호 피·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보고 및 추인의 건
- 2. 접수번호 2020 00호 ○○학교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건입니다.

☞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심의

▶ 위원장

✔ 간사께서는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 본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근거하여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지였던 사람이 해당 시전의 피해 또는 기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해당 위원은 본회의에서 제척되며 관련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에 대해 소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 ✔ 또한,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위 사항에 해당되어 제척되거나 회피하신 위원이 있습니까?

▶ 위원들

- ✔ 없습니다. (있는 경우는 제척 및 회피 사유를 밝힌 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 *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소위원회 참석 당일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야 함

☞ 주의시항 전달

▶ 위원장

-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본 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 둘째, 본 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 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각각의 학교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주 시고, 본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 ✔ 넷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 의거 본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등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안 보고(학교장 긴급조치 보고 포함)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학생 및 학부모님께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금일 심의할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20○○-○○호 ○○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 사안개요

- 피해학생: ○○ 중학교 1학년 김○○

- 가해학생: ○○ 중학교 1학년 김○○

- 발생일시: 2020년 00월 00일()

- 발생장소:

2. 사건경위: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

3. 쟁점사항

- 피해추정학생 주장:
- 가해추정학생 주장:
- 목격학생 진술:
- 학교 측 의견:
- 4.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 5. 특이사항: 언론보도, 신고여부, 장애여부, 진단서 등
-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청(접수)일: 2020년 00월 00일()

✔ 이상으로 2020-00호 ○○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 금일 사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사는 간략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 학생•보호자 질의•응답 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추정학생 측 의견 진술, 질의 응답

▶ 위원장

- ✔ 먼저 피해추정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학생과 보호자 분 맞으십니까?
-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본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소)위원회 참석 당일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야 함
- ✔ 진술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발언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둘째,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본 회의에서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의거 본 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본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피해추정 측 주장 확인 (특히, 가해추정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관련 확인
-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략)

-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학교 ○○○학생과 보호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피·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 ✔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239-3547)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치결정 통보 시, 불복 절차도 서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 ○○○학생과 보호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 기해추정 학생 측 일견 진술, 질의 응답

▶ 위워장

- ✔ 먼저 가해추정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학생과 보호자 분 맞으십니까?
-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본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소)위원회 참석 당일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야 함
- ✔ 진술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발언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둘째,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본 회의에서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의거 본 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본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가해추정 측 주장 확인 (특히, 피해추정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관련 확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략)

-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학교 ○○○학생과 보호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피·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 ✔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239-3547)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치결정 통보 시, 불복 절차도 서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 ○○○학생과 보호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담임,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참고인 예시]

- 해당학교 교직원: 사안관련 사실, 교우관계, 피해정도 및 현재 상황, 학교생활, 반성정도 등을 확인
- 청소년 관련 전문가: 관련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심리 상태 등을 확인
-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학생의 인지, 심리, 행동 특성 등을 확인
- 다문화교육 전문가: 다문화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 등을 확인
- 성폭력 분야 전문가: 성 사안을 이해하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등을 확인
- 사이버폭력 분야 전문가: 사이버폭력 사안을 이해하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등을 확인
- ※ 유의사항: 참고인은 의견 진술을 한 후에 즉시 퇴장, 조치 결정에 관여하는 발언 금지

▶ 위원장

- ✔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사 되십니까?
- ✔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편안한 맘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시안 여부 협의

▶ 위원장

✔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u>학교폭력 사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u>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여부 심의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
- ㆍ 가해추정 학생의 행위가 피해추정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
- ·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증거불충분**에 따른 학교폭력 아님 결정)
- ·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혐의 없음**에 따른 학교폭력 아님 결정)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진 사안 중에 학교장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 → 추인 부결
- 위원회에서 쌍방 간의 화해(합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
- ㆍ 조치유보 → 회복조정 의뢰 → 조정결과 보고서 검토 → 심의위원회 재 개최 및 자체해결 여부판단
- 회복조정 절차 없이 단순 화해를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등으로 결정할 수 없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학교폭력 아님으로 인정된 경우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위해 심의 진행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여 회의 종료

▶ 위원장

- ✔ (학교폭력인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학교 ○○학생이 ○○학생에 대한 행위는 ○○학생에게 신체 및 정신 상 피해를 유발한 행위로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학교 ○○학생이 ○○학생에 대한 행위는 ○○학생에게 신체 및 정신 상 피해를 유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장 피·기해학생 긴급조치 보고 및 추인 협의

▶ 위원장 (법령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만 해당)

✔ 다음은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가해학생 긴급조치 추인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간사는 피●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 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2020-00호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 긴급조치로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내려졌으며 가해학생에게는 긴급조치 제6호 출석정지 10일이 내려졌습니다.(2020.00.00 ~ 2020.00.00)

(중략)

※ 긴급조치 추인: 가해학생 조치만 해당되며 추인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임- 긴급조치가 추인된 경우, 긴급조치를 고려하여 가해학생 최종 조치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 위원님들께서는 긴급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피해학생 측의 요구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 ✔ 출석위원 00명 중, 00명이 동의하여 과반이 의결하였으므로 '학교장 긴급 조치에 대한 추인' 안건은 가결되었으며 긴급조치 사항을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위원 00명 중, 00명이 동의하지 않아 과반 의결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장 긴급 조치에 대한 추인'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님 결정이 내려진 사안 중 긴급조치가 포함된 경우 등)
- ✔ 이어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 위원장

- ✔ 먼저 ○○학교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심의하겠습니다.
- ✔ 위원님들은 현재 피해학생에게 꼭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시숙고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 ○○학교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제0호로 결정(가급적 기간 명시)되었으며,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가해학생에 대한 쪼치 심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유의사항

조치이행 완료일 명시	시간단위 조치결정	조치기간 명시	일 단위 조치
- 서면사과, 교내봉사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 접촉금지	- 출석정지
예시) 00월 00일 까지 이행	예시) 00시간	예시) 0월0일~0월0일	예시) 00일

- 1호(서면사과) 조치완료 기간 명시
- 2호(접촉금지) 조치기간 명시
- 접촉의 범위: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에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제외
- 3호(교내봉사) 조치완료 기간 명시
-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단위 조치(화단·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등)
- 4호(사회봉사) 시간단위 조치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봉사(1365 나눔포털, VMS, DOVOL에 등록된 봉사기관 활용), <mark>봉사활동 시수 불인정</mark>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간단위 조치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조치
- 학생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 특별교육 발생,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미 발생
- · 심리치료 : 교육의 관점이 아닌 우울증, 정서장애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u>가해학생에게 정신과 진료를 내리는 조치</u>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학부모 특별교육 미 발생을 위한 심리치료 조치 절대 금지)**
- 6호(출석정지) 일 단위 조치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간 설정)
-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도록 해야 함(자율학습, 위탁교육, 가정학습 등이 가능하나 기간 내에 무단결석 처리
- 7호(학급교체) 해당학교 학급 수 확인
- 8호(전학)
-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2020년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고)
- 동일지역(계열)의 배정원칙에 따라 관할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정원 외 3%)
- 전학 조치된 학생은 전적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음(고등학생 1년 이내 전적교 소속 지역 전학 불가)
-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각각 다른 학교 배정
-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 주소지 이전 등의 자발적 전학 불가
- 9호(퇴학)
-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 전학 및 자퇴 등 불가

▶ 위원장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협의하겠습니다.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평가 (1, 3, 4, 6, 7, 8, 9호 조치 결정) → 2차 평가 (2, 5호 조치 병과 여부 심의, 단독조치 가능) → (부가적 판단요소 심의)

-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위원님들께서는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화해 정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각 항목 점수의 평균이 아닌 기본 판단요소별 협의를 통해 판정

- ✔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판정 점수를 종합하면,
- 심각성 00점, 지속성 00점, 고의성 00점, 반성 정도 00점, 화해 정도 00점, 총 00점으로 제0호 조치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 ✔ 다음은 가해학생에게 병과 조치(제2호, 제5호)가 필요한 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위원회 의결로써 제2호 제5호 조치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외에 소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하위조치를 병과 할 수는 있으나 적용별 세부 기준 및 선도가능성과 2호, 5호 처분의 필요성 등을 협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하위 조치가 병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출석위원 00 중 과반인 00명의 위원이 (제2호 접촉금지)의 의견을 주셨으므로 제2호 접촉금지를 병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 다음은 기본요소 항목에 대한 판정 점수에 의해 가해학생 조치가 0호로 결정되었지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가해학생의 조치를 경감 혹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안유지)
 가해학생의 개전가능성이 낮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 아니므로 가중 또는 경감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치경감)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 태도도 양호하였던 것으로 볼 때 선도 가능성이 있고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0호 조치로 경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치가중)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폭력이고 그간의 학교생활 태도를 고려할 때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 하다고 인정되어 0호 조치로 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추가되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특별교육	특별교육 추가 여부		
기에릭형 포시	학생	보호자	권장시간	
1호(서면사과), 9호(퇴학)	×	×	-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О	О	4시간 이내	
5호(특별교육이수)	×	Ο	5~8시간 이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О	О	7 3~6시간 이대	

- 가해학생이 2~4호, 6~8호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가 추가되고 전라북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참고하여 시간 단위로 결정, 안내해야 합니다.
- ✔ 간사는 우리교육청 특별교육기관 및 이수 기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17조 제1항 제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조치와는 구별되는 조치로써
- 가해학생에게 제5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만 특별교육이수 조치 추가

▶ 간사

✔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계획에 따르면, (중략)

▶ 위워장

-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 (가해학생에게 5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00시간을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해학생에게 5호 조치가 안 내려진 경우)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00시간을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 금일 심의한 사안에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2020-00호 ○○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는
 - 제0호 00시간(일), 제0호 00시간(일)이며
 - 추가조치로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0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00시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간사는 심의(소)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피해학생은 7일, 가해학생은 14일 이내 본 조치가 통보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검토위원 선출

▶ 위원장

- ✔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으로 ○○○위원,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두 분을 회의록 검토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으로 ○○○위원, △△△위원을 선정하고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검토 위원에게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이상으로 20○○-○○호 ○○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인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간사는 학교장 자체 해결했던 사안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시안이 있는 경우

▶ 간사

- ✔ 2020-00호 ○○학교 ○○○학생의 사안은 지난 ○○월 ○○일에 발생하여,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으며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를 확인하고 학교장해결 동의서를 00월 00일 날 받아 학교장 자체 해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 차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위장

- ✔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는 시안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고 차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전담기구의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상으로 20○○-○○차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봉 3타)

(19:00 폐회)

작성일: 2020. 00. 00.

검토	000	$\triangle\triangle\triangle$
점 토 위 원		
(서명)		

재적위원 ○○명	출석위·	원 ○○명	참고인(기타참가자) ○○명
	위원장	000	
	위원	$\circ \circ \circ$	
	위원	$\circ \circ \circ$	담임교사 〇〇〇
	위원	$\circ \circ \circ$	책임교사 〇〇〇
	위원	$\circ \circ \circ$	상담교사 〇〇〇
	위원	$\circ \circ \circ$	목격학생 〇 〇 〇
	위원	$\circ \circ \circ$	
	위원	$\circ \circ \circ$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 재활 등의 지원
-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5. 판사·검사·변호사
 -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 ①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 ①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 ①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 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12. 1. 26.>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삭제 <2012. 3. 21.>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1. 삭제 <2012. 3. 21.>
 - 2. 삭제 <2012. 3. 21.>
 -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 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설 2012. 3. 21.>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본조신설 2009. 5. 8.]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 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 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 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 ①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설 2012. 3. 21.>
-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 ④ 삭제 <2019. 8. 20.>
 - ⑤ 삭제 <2019. 8. 20.>
 -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0.]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나 좋사자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16441호, 2019. 8. 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

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자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에 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제4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 3. 시 · 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5. 판사·검사·변호사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 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 2. 해당 시 · 군 · 구의회 의원
-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5. 판사 · 검사 · 변호사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 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 4. 판사·검사·변호사
 -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 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한다. <개정 2020. 2. 25.>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교육장으로 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

- 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 삭제 <2020. 2. 25.>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
 - 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폭력 예방활동
 -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0.]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상담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30441호, 2020. 2. 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7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_	82	_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3. 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 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 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18호, 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